

『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 및 표준 조례준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여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

3. 주요 내용

○ 제명변경

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」
⇒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

○ 발생억제 책무 조항 신설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지자체 시책 협력 토록 함.

○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(안 제8조)

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를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함.

○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(안 제2조 및 제16조)

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 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여 사업자가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.

○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(안 제9조 및 제16조)

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함.

4. 관련근거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5조

○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
표준 조례준칙 : '10. 12. 환경부

○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표준조례준칙 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
-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」를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
-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 시책에 최대한 협력토록 함과,
- “감량 의무사업장”을 “다량배출사업장”으로 명칭변경하고,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이므로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